

## 지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규정

1994. 1. 21 제정  
1995. 2. 7 개정

### 제1장 총칙

**제1조(목적)** 본 규정은 대한교통학회 정관 제3조의 대한교통학회(이하 "본 학회"라 칭한다) 지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2장 지회의 설치 및 운영

#### 제2조(설치)

1. 지방회원의 학회활동을 활성화하고 각 지방의 특성에 부합하는 연구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30인 이상의 정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에 지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2. 본 학회의 지회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들이 기재된 "지회설치신청서"를 본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  - 1) 지회의 명칭
  - 2) 지회사무소의 위치
  - 3) 지회설치의 목적 및 필요성
  - 4) 정회원 10인 이상이 서명한 지회설치 발기인 명부
  - 5) 지회의 회칙 등 기타 필요한 사항
3. 지회의 설치에 이사회의 의결을 따른다.

#### 제3조(기구)

1. 지회에는 지회장 1인을 둔다.
2. 지회장은 정관 제11조에 규정된 본 학회 정회원 중에서 지회에서 선출하고 본 학회 회장이 인준한다.
3. 지회장은 지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회 부회장을 둘 수 있으며, 지회의 부회장은 지회장이 임명한다.

#### 제4조(운영)

1. 각 지회는 자치적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임원의 임기, 예산 등에 관한 사항은 지회의 규정에 따른다.
2. 본 학회 회장 또는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지회장에게 지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3. 지회장은 본 학회에 예산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
4. 이외의 사항들에 대해서는 본 학회의 정관에 따른다.

**제5조(해체)** 제2조에 규정된 지회설치의 요건이나 지회운영의 필요성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본 학회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회를 해체할 수 있다.

### 부칙

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된다.